

『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1월 3일

나. 제출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월 11일

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팀 방호경 주무관

나. 제안이유

-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
토록 장려하여 지역 농업인의 물류비 절감과 소득보전 및 도매시장
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중 일부 지원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지원 관련 신설(안 제6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,
「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」 제7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○ 본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

-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구미시 거주 농업인에게 출하한 물품의 위탁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,
-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출하인은 '21년 기준 약 5,100명이며 이 중 구미시 출하인은 2,950명(약 58%)정도임. 출하자가 각종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여 법인에게 매매를 위탁하면서 발행하는 수수료는 출하금액의 7%이며 이 중 2%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지역 농민의 물류비 절감과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출하자 신청에 의한 지원이므로 보다 많은 출하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